

트리븐 삼척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18.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573-500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18.(금)	2025.07.28.(월)	2025.07.29.(화)	2025.07.30.(수)	2025.08.06.(수)	2025.08.10(일)~ 2025.08.16(토)	2025.08.18(월)~ 2025.08.20(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rivn-doosan-samcheok.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삼척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28.(월)	2025.07.29.(화)	2025.07.30.(수)	2025.08.06.(수)	2025.08.10(일)~ 2025.08.16(토)	2025.08.18(월)~ 2025.08.20(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90-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삼척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축과 - 27604 호(2025. 07 . 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20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4~29층 4개동 총 418세대 [특별공급 208세대(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85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98	01	084.7567	84	84.7567	28.1097	112.8664	19.5896	132.4560	64.7844	369	36	36	85	10	34	201	168
	02	099.9034	99	99.9034	32.7151	132.6185	23.0904	155.7089	76.3618	49	-	5	-	2	-	7	42
	합 계									418	36	41	85	12	34	208	210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	99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7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	7
	장애인	8	-	8
	중소기업 근로자	7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6	5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	8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2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34	-	34
합 계		201	7	20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www.trivn-doosan-samcheok.com)의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해당 동, 라인, 층 및 가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	2회	1회(15%)	2회(15%)	3회(15%)	4회(15%)	입주시
									계약시	30일 이내	25.12.26	26.06.26	27.02.22	27.08.27	
84	369	101동 (1~4호)	2	4	45,802,500	417,497,500	-	463,300,000	10,000,000	13,165,000	69,495,000	69,495,000	69,495,000	69,495,000	162,155,000
			3	4	45,802,500	414,497,500	-	460,300,000	10,000,000	13,015,000	69,045,000	69,045,000	69,045,000	69,045,000	161,105,000
			4	4	45,802,500	417,497,500	-	463,300,000	10,000,000	13,165,000	69,495,000	69,495,000	69,495,000	69,495,000	162,155,000
			5	4	45,802,500	420,497,500	-	466,300,000	10,000,000	13,315,000	69,945,000	69,945,000	69,945,000	69,945,000	163,205,000
			6	4	45,802,500	423,497,500	-	469,300,000	10,000,000	13,465,000	70,395,000	70,395,000	70,395,000	70,395,000	164,255,000
			7	4	45,802,500	426,497,500	-	472,300,000	10,000,000	13,615,000	70,845,000	70,845,000	70,845,000	70,845,000	165,305,000
			8	4	45,802,500	429,497,500	-	475,300,000	10,000,000	13,765,000	71,295,000	71,295,000	71,295,000	71,295,000	166,355,000
			9	4	45,802,500	432,497,500	-	478,300,000	10,000,000	13,91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71,745,000	167,405,000
			10~14층	20	45,802,500	435,497,500	-	481,300,000	10,000,000	14,065,000	72,195,000	72,195,000	72,195,000	72,195,000	168,455,000
			15~19층	20	45,802,500	442,497,500	-	488,300,000	10,000,000	14,415,000	73,245,000	73,245,000	73,245,000	73,245,000	170,905,000
			20층 이상	37	45,802,500	449,497,500	-	495,300,000	10,000,000	14,765,000	74,295,000	74,295,000	74,295,000	74,295,000	173,355,000
		102동 (1~4호) 103동 (3~4호) 104동 (1~4호)	2	10	45,802,500	422,497,500	-	468,300,000	10,000,000	13,415,000	70,245,000	70,245,000	70,245,000	70,245,000	163,905,000
			3	10	45,802,500	419,497,500	-	465,300,000	10,000,000	13,265,000	69,795,000	69,795,000	69,795,000	69,795,000	162,855,000
			4	10	45,802,500	422,497,500	-	468,300,000	10,000,000	13,415,000	70,245,000	70,245,000	70,245,000	70,245,000	163,905,000
			5	10	45,802,500	425,497,500	-	471,300,000	10,000,000	13,565,000	70,695,000	70,695,000	70,695,000	70,695,000	164,955,000
			6	10	45,802,500	428,497,500	-	474,300,000	10,000,000	13,715,000	71,145,000	71,145,000	71,145,000	71,145,000	166,005,000
			7	10	45,802,500	431,497,500	-	477,300,000	10,000,000	13,865,000	71,595,000	71,595,000	71,595,000	71,595,000	167,055,000
			8	10	45,802,500	434,497,500	-	480,300,000	10,000,000	14,015,000	72,045,000	72,045,000	72,045,000	72,045,000	168,105,000
			9	10	45,802,500	437,497,500	-	483,300,000	10,000,000	14,165,000	72,495,000	72,495,000	72,495,000	72,495,000	169,155,000
			10~14층	50	45,802,500	440,497,500	-	486,300,000	10,000,000	14,315,000	72,945,000	72,945,000	72,945,000	72,945,000	170,205,000
			15~19층	50	45,802,500	446,497,500	-	492,300,000	10,000,000	14,615,000	73,845,000	73,845,000	73,845,000	73,845,000	172,305,000
			20층 이상	80	45,802,500	452,497,500	-	498,300,000	10,000,000	14,915,000	74,745,000	74,745,000	74,745,000	74,745,000	174,405,000
99	49	103동 (1~2호)	2	2	53,987,800	450,920,182	45,092,018	550,000,000	10,000,000	17,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192,500,000
			3	2	53,987,800	447,738,364	44,773,836	546,500,000	10,000,000	17,325,000	81,975,000	81,975,000	81,975,000	81,975,000	191,275,000
			4	2	53,987,800	450,920,182	45,092,018	550,000,000	10,000,000	17,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82,500,000	192,500,000
			5	2	53,987,800	454,102,000	45,410,200	553,500,000	10,000,000	17,675,000	83,025,000	83,025,000	83,025,000	83,025,000	193,725,000
			6	2	53,987,800	457,283,818	45,728,382	557,000,000	10,000,000	17,8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94,950,000
			7	2	53,987,800	460,465,636	46,046,564	560,500,000	10,000,000	18,025,000	84,075,000	84,075,000	84,075,000	84,075,000	196,175,000
			8	2	53,987,800	463,647,455	46,364,745	564,000,000	10,000,000	18,2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197,400,000
			9	2	53,987,800	466,829,273	46,682,927	567,500,000	10,000,000	18,375,000	85,125,000	85,125,000	85,125,000	85,125,000	198,625,000
			10~14층	10	53,987,800	470,011,091	47,001,109	571,000,000	10,000,000	18,550,000	85,650,000	85,650,000	85,650,000	85,650,000	199,850,000
			15~19층	10	53,987,800	476,374,727	47,637,473	578,000,000	10,000,000	18,9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86,700,000	202,300,000
			20층 이상	13	53,987,800	482,738,364	48,273,836	585,000,000	10,000,000	19,2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87,750,000	204,750,000

※ 전세대 필로티 설계로 트리는 삼척의 경우 1층 세대가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 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자 임의시공을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선희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m²)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삼척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강원특별자치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85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r><th>순위</th><th>내용</th></tr><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1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 11,528,499원	11,151,515원 ~ 13,724,941원	11,740,363원 ~ 14,449,677원	12,653,013원 ~ 15,572,938원	13,565,662원 ~ 16,696,198원	14,478,312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삼척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7.28.(월) (청약Home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90-2)
일반공급	1순위	2025.07.29.(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7.30.(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8.06(수) ~ 2025.08.1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8.0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1>공통(특별,일반) 제출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포함)	○		공급(특별)신청서, 확약서, 서약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 서약 등(서약서로 대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		인감도장	본인 (청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본 (전체 포함)	본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청약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시 필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본인 (청약자)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청약자) 직계존 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청약자)	- 청약신청자가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 속	-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본인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 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임신 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 각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청약자)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청약자)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본인 (청약자)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표2>참고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세대구성원 포함)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 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 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	부동산 소유 현황 <표4>참고	본인 (청약자) 및 세대원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사업용 건물 [토지분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 산정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포함)	직계존 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 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직계비 속	- 주민등록표 등본 상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청약자)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직계존 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직계비 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 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 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청약자)	- 혼인 사실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본인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표2>참고	본인 (청약자)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세대구성원 포함)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표3>참고	만19세 이상 세대원 본인 (청약자)	-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표4>참고	본인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 증빙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 있는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서류 제출
	○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사업용 건물 [토지분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자 중 혼인중이 아닐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 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자로 만 18세 이상"미혼인 자녀"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직계존 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배우자 본인 (청약자)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 속	- 신청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 속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 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그 직계존속을 부양 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전부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비 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속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 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 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청약자)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② 모두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번호기재필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소명)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자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자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본인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비고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③ 직장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③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③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재표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 근로소득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건분주택에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 <표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 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중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연속적인 납부 실적이 아닌,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표4>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②주민센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8.18(월) ~ 2025.08.20(수) (3일간, 10:00~16:00)	트리브 삼척 견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90-2번지)	033)573-5003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 대금	KB국민은행	469301-01-253627	대한토지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함)

※ 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입금 확인증(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대한토지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납부 증명서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본인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청약자)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 + 프리미엄 등)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	-------------------	------------------	------------------	---------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일정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5%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정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84	16,400,000	1,640,000	14,760,000
99	19,300,000	1,930,000	17,37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KB국민은행	469301-01-253599	대한토지신탁(주)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품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실별, 위치별로 선택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또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및 마감재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승인 시 제출하는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품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타사항	비고
발코니 비확장형		-	22mm 로이일면 복층유리 PVC 이중창 (내부 로이유리 + 외부일반유리)	없음	로이유리는 1면 적용으로 해당 부위는 현장여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확장형	침실1(안방)	22mm 일반복층유리 PVC 이중창	-	22mm 로이일면 복층유리 PVC 단창 (내부 로이유리 + 외부일반유리)	
	거실	-	22mm 로이일면 복층유리 PVC 이중창 (내부 로이유리 + 외부 일반유리)	-	
	침실, 주방, 알파룸, 드레스룸	-	22mm 로이일면 복층유리 PVC 이중창 (내부 로이유리 + 외부 일반유리)	-	
	발코니	-	22mm 로이일면 복층유리 PVC 단창 (내부 로이유리 + 외부 일반유리)	-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또는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벽체·천장 마감재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하나은행	148-890038-50104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계약시	27. 2. 26	입주지정기간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유상 및 무상 선택옵션)

- ※ 모든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 추가선택 품목은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세부사항(계약일정 등)은 추후 견본주택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가) 시스템 에어컨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옵션 선택	실내기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판매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제조업체명
					계약시	27.02.26	입주지정일	
84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00,000	490,000	1,960,000	2,450,000	삼성전자
	선택2	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3,160,000	3,950,000	
	선택3	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펜트리(대)	9,300,000	930,000	3,720,000	4,650,000	
99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50,000	495,000	1,980,000	2,475,000	
	선택2	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펜트리(대)	10,000,000	1,000,000	4,000,000	5,000,000	

나)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선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건본주택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모델도 상이함
- 84타입의 경우, 현관창고와 펜트리 가변 옵션(식당 폭 확장형과 식당 폭 축소형)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됨

2.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계약금 10% + 2027년 2월 26일 중도금 40% + 입주 시 잔금 50%)

가) 인테리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미선택시 (발코니확장 선택 시 기본마감)	플러스옵션	타입별(약식표기) 판매가	
					84	99
개별 옵션	거실/식당/복도 (84타입:현관창고/펜트리 분리형_선택1)	바닥타일	강마루	포세린타일 (중국산, 600*600)	2,050,000	-
	거실/식당/복도 (84타입:현관창고/펜트리 축소형_선택2)				2,150,000	-
	거실/식당/복도/펜트리(99타입)				-	2,450,000
	거실/식당/복도(99타입)				-	2,200,000
	펜트리(84타입)	드레스룸 선반 (현관창고/펜트리 “선택2”가능)	없음	일반 포스트+선반 (패널형 선반 없음)	600,000	-
	다용도실 가구	다용도실 수납가구	2단 세탁선반(소폭_콘센트 없음)	가구 위 MMA 상판(콘센트 포함)	1,100,000	1,200,000
	식당	홈바 장식장	없음(창고 확장)	PET 표면재 + 상판/벽 세라믹박판패널	3,080,000	3,300,000
	침실3	불박이장	-	PET 표면재 + 측면 거울	1,760,000	1,870,000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1,900,000	1,900,000
	안방	파우더룸 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 오픈	파우더룸 오픈 +드레스룸 양개 유리 도어	AL Frame + 패턴유리(전 타입)	550,000	550,000
	욕실	일체형 비데	공용 : 투피스양변기 부부 : 원피스양변기	일체형 비데(2개)	900,000	900,000
		공용욕실 샤워부스(99타입)	욕조(등없음/청소솔)	샤워부스(등설치/청소용수전)	-	500,000
		욕실2 벽타일(99타입)	일반 타일(300*600)	포세린 타일(중국산, 600*1,200)	-	1,000,000
마감 특화1	거실	아트월 1면	포세린 타일(600*1200 중국산)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3,650,000	4,000,000
	거실/복도(홈바 선택 시)	벽패널	벽지	PET 표면재(일부 시트 적용) +픽처레일 몰딩		
마감 특화2	거실	아트월 1면	포세린 타일(600*1200 중국산)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4,200,000	4,550,000
	거실/복도(홈바 선택 시)	벽패널	벽지	PET 표면재(일부 시트 적용) +픽처레일 몰딩		
수납 특화	침실 1	드레스룸 선반	일반 포스트+선반 (패널형 선반 없음)	패널+선반형_일부 1단 조명 (전 타입)	3,800,000	4,390,000
	욕실	세면대 하부장	독립 세면대(전타입/욕실1, 84타입/욕실2) 카운터 세면대(99타입/욕실2)	세면대 가구 일체형 (전타입/욕실1, 84타입/욕실2)		
				세면대 하부장(99타입/욕실2)		
조명 특화	거실/식당	우물천장	천장지+일반 직부등 (84타입 : 거실 1개소만 적용)	시트패널+리니어 조명 (거실 : 디밍 적용)	3,380,000 (현관창고+펜트리 대)	3,590,000
		아트월 간접조명	천장지	적용		
	주방	디자인 조명	일반 평매입등	매입형	3,350,000 (현관창고+펜트리 대)	
주방 특화1	주방가구	상부 플랩장	손잡이 없는 상부장(PET 표면재)	유리 도어+LED 조명	3,450,000	3,250,000
		하부 아일랜드	일반 디자인 하부장(PET 표면재)	수평형 특화 디자인+LED 조명		
		유리 장식장	주방상판 위 조명없는 오픈장	유리 도어+LED 조명		
			PET 도어+목선반 키큰장 (99타입, 조명 없음)			
		펜트리 도어	목 슬라이딩 도어(84타입) 여닫이 목도어(99타입)	유리 슬라이딩도어 (84타입 중 현관창고/펜트리 “선택2” 가능)		
주방 특화2	주방 마감	벽체	벽체 : 타일(300*600)	세라믹 박판 패널 (벽:6T/상판:12T_중국산)	3,400,000	3,650,000
		상판	상판 : 인조대리석(MMA)			

나)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플러스옵션			미선택시	플러스옵션	선택	타입별(약식표기) 판매가					
						84	99				
가전	주방/식당	키친핏+키친장	오픈형 냉장고 장(선반 없음)	LG전자 / 컨버터블 패키지(이지핸들)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BC1L1AA+BC1F1AA+BC1K1AA1)	통합	4,840,000	5,28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친장	오픈형 김치냉장고 장 (선반 없음)	LG전자 / 김치냉장고(RSK221JVPL/R)	통합	1,850,000	1,900,000				
		인덕션(3구)	-경동나비엔 / 3구가스 쿡탑(GRB-4003)	디트리쉬 / 인덕션 (DPI4330B) - 가스배관 미시공 -	개별	1,800,000	1,800,000				
		식기세척기	수납장	삼성전자 / DW60T7065SS	개별	1,200,000	1,200,000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	코스텔(주) / 천장형 제습기(CDD-600B)	개별	900,000	900,000				
	욕실	복합 환기팬(2개소)	일반 환기팬	힘펠 FHD3-C150P	개별	1,160,000	1,160,000				
다) 기본선택 품목											
타입(약식표기)		선택 내용		비 고							
		선택 1(기본형)	선택 2(옵션형)								
84타입		현관창고(선반 제공)/펜트리(대_선반 미제공) 분리형	현관창고 확장(선반 제공)/펜트리(소_선반 미제공) 축소형	공사 일정 고려 일정시점 이후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84타입의 경우는 선택 내용에 따라 식당 폭 (확장 또는 축소)이 변경됨							
99타입		현관창고/펜트리 분리형	현관창고/펜트리 통합형								
라)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개별옵션 외 특화옵션은 분리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단, 공사 수행중인 품목은 예외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분양계약 시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자재공급 지연, 품질, 품귀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추가 선택품목이 전채로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발코니확장 시 기본마감과 추가 선택옵션 내용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내의 POP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여건, 발주 시기, 평면 구성 등에 따라 트리는 브랜드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각 품목별 판매가는 지역별로 판매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각종 타일 등의 패턴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각 추가 선택품목 가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형 마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옵션 유형별 조합 시 표에 없는 내용이 발생될 경우, 일부 마감 면적이 다소 상이하더라도(예 : 주방특화2 선택+주방특화1 미선택)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각종 디자인, 가구의 경우는 수납형태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양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주방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키친핏 가구 옵션(냉장/냉동/김치) 선택 시 맞춤형 키친장은 일괄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자본이 개별로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장이(선반 없음) 시공되고, 키친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장의 형태와 규격 및 마감 기준은 타입별 상이하여 개별로 설치하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일부 기종은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99타입 키친핏 또는 김치냉장고 선택 시 통합으로 선택되는 키친장은 PET 도어+목선반(조명 없음)이 적용됩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 시 키친핏 옵션을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반 및 주방가구와 동일하게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이 미적용됩니다.
- 주방가전(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지며, 도어장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 3구(경동나비엔) 가스쿡탑 제품이 설치되고 주방에 가스배관이 노출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설치시에는 주방에 가스배관 미시공)

(3) 개별/마감/조명/수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거실/주방/복도 바닥타일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일반 강마루가 시공됩니다.
- 바닥타일의 경우, 홈바 장식장 선택 또는 미선택 시(현관창고 확장/펜트리(소) 선택2 해당) 동일 가격으로 적용함
- 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줄눈 나누기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자재의 특성, 시공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의 세라믹 박판패널, 거실 및 복도의 바닥타일, 욕실 타일 등의 옵션품목은 제품특성상 시공방법에 따라 견본주택과 세대별로 색상, 패턴, 줄눈 나누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거실 등의 벽체패널 미선택 시 벽지 및 일반물딩으로 시공되며, 패널 나누기와 돌출 두께 및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패널마감은 본 공사 시 접합부의 돌출, 들뜸현상, 고정하기 위한 타카(못)자국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벽체 패널마감 선택 시 시공되는 벽면은 일부 특정된 벽면만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또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벽체 패널마감 선택 시 홈바 선택 유무에 따라 마감특화1 또는 마감특화2로 구분됩니다.
- 거실 아트월 천장 간접박스 시공 시 조명효과 및 유지보수를 위해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선택(우물천장, 시트패널, 거실 아트월 간접등, 주방 라인형 매입 조명, 거실 및 식당 리니어 조명) 시 제공되는 품목은 미선택 시 조명류는 거실, 식당 및 주방은 일반 직부등이 시공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함께 반영되는 우물천장 패널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자재의 특성에 따른 이음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99타입은 주방포함)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및 드레스룸 1도어 슬라이딩 타입은 주택형별 사양(개폐위치, 사이즈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슬라이딩 미선택 시 오픈형으로 시공되며, 드레스룸 공간에 별도의 유리 가구 양개도어가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시 신발장과 이웃하여 경량벽체(기본 : 도배마감)가 시공됩니다.
- 수납특화 중 84타입 욕실1/욕실2와 99타입 욕실1 세면대 하부장 미선택 시에는 독립형 세면대만 설치되며, 99타입 욕실2(부부욕실) 세면대 하부장 선택 시에는 측면/바닥/후면의 마감은 미적용됩니다.
- 욕실 개별 선택 품목인 일체형 비데는 2개소 일괄 선택이며, 미선택 시에는 공용욕실에 투피스양변기, 부부욕실에 원피스양변기가 설치됩니다.
- 욕실 복합 환기팬 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팬은(제조사는 본공사 시 확정)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 욕실팬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욕실 복합 환기팬 옵션은 2개소(공용욕실,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리모컨 제어 가능)
- 욕실 복합 환기팬 선택에 따라 욕실 천장 점검구, 욕실 조명의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급 드레스룸 선택 시 벽면은 패널마감이며, 벽체 석고보드가 추가 시공될 수 있어 실제치수 및 안목치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 마감특화(패널옵션) 선택 시 판매가는 현관창고와 펜트리 가변형 선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 99타입 공용욕실 샤워부스 미선택 시 욕조(천장조명 없음, 청소용 수전은 청소솔로 변경됨)가 기본 제공되고, 샤워부스 선택 시 샤워공간 확보를 위해 세면대 및 양변기 공간 폭이 축소될 수 있으며, 샤워부스는 공사 일정 고려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기본형(욕조)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홈바 장식장 선택은 84타입/99타입 무상선택2 선택 시에만 가능하며, 가구 설치에 따라 무상선택 내용과 다르게 현관창고 공간이 다소 축소됩니다.
- 다용도실 수납가구 선택 시 상판은 주방가구 기본형 주방상판과 동일한 MMA(인조대리석) 상판과 콘센트가 함께 설치되며, 미선택 시 세탁기 폭보다 작은 일반 세탁선반(2단)이 설치되고 수납가구에 설치된 콘센트는 미적용됩니다.

- 주방 흡바 장식장과 접하는 비노출면에는 별도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고급형 선반의 조명 스위치의 위치,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타입 현관창고+펜트리(대) 분리형 선택 시 조명특화를 선택할 경우 현관창고 확장+펜트리(소) 축소 타입과 달리 식당 우물천장이 축소됩니다.(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 시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도 변경됨)

(4) 주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전타입 “주방특화1”에 적용되는 주방 유리 상부장(조명 포함) 및 ‘ㄷ’자형의 식당면 수평 디자인 하부장(조명 포함), 식당면 장식장(조명 포함), 주방벽면 키큰장(조명포함,99타입) 미선택 시에는 PET 상부장 및 일반 디자인 하부장, 오픈형 목선반(조명이 없음), PET 마감의 목선반 키큰장(조명포함,99타입) 등이 시공됩니다.
- “주방특화2”에 적용되는 벽체 및 상판 세라믹 박판패널 미선택 시에는 싱크대 벽면 주방벽(300*600)타일, 상판 MMA로 반영되며, 99타입의 식당면 하부장은 광폭으로 MMA(인조대리석) 자재 특성상 이음선이 발생합니다.
- “주방특화1” 선택 “주방특화2” 미선택 시에 적용되는 세라믹 박판패널의 면적 변경에 따른 가격은 자재의 특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은 없습니다.
- 전타입에 적용되는 펜트리(84타입 “선택2” 펜트리(대)는 슬라이딩 유리문 해당없음) 슬라이딩 유리문은 주방 특화 디자인을 고려한 동일 패키지로 “주방특화1” 미선택 시에는 시트목문 목슬라이딩 도어(84타입), 여닫이 목도어(99타입)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고급형 디자인 특화에 따라 기본형 가구 대비 수납공간이 축소되며, 수납 선반 형태도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장식장 및 주방가구의 조명 스위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시공성 및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주방상판 및 벽체(유상옵션 품목)의 세라믹박판 패널의 패턴 및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절단에 의한 접합 라인이 발생합니다.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가전 제품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주방 가구와 접하는 비노출면에는 별도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5) 무상옵션

- 99타입 현관창고+펜트리 통합형 선택 시 현관과 동일 레벨로 바닥타일(난방 미적용)로 시공되며, 내부 벽체 및 천장은 현관창고와 동일합니다.
- 주방 흡바 장식장 선택 시 현관창고는 공간 구조상 다소 축소됩니다.

11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입접 도로 및 경사지,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추가 선택품목이 모두 반영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 옵션형 및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기본마감에 대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인접 건축물과 도로, 경사지 옹벽,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식재, 주차계획, 포장계획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 사에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선행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인 동 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음 • 추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지하 및 지상주차장,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조경(포장패턴, 식재, 놀이터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등) 등은 실시공 시 인허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및 단면 높이, 마감재, 마감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되어 각 세대의 계약면적 및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소방전용구역 등), 단지 내 보도 및 차량 경사로 형태 및 경사도, 각종 옹벽의 종류 및 높이 등 - 단지 내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 줄눈 및 패턴과 색상, 로고 등의 위치, 마감 재질 등 - 동출입구 및 캐노피, 문주 및 키즈스테이션,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한전패드(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설치 요구 시 설치됨), 보도 및 도로 포장, DA(급배기구),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소방전용구역 등 -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단지 외부 도로 및 인접 단지 개발사항 등에 의한 변경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현장 여건, 인허가 관청의 협의 등에 따라 주변시설이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편의시설, 단지 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내부 운동기구(실시공 시 제품 사양 및 형태는 각종 홍보물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및 가구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건축물 및 시설물, 인접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참빛영동도시가스(주)를 통하여 공급 예정임
단지여건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시된 인접 도로, 교회를 포함한 인접 단지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또는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경사지 조성 방식은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폭, 레벨, 조성 내용 등이 단지 모형 및 각종 CG와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1개소)는 단지 레벨 여건상 복측 도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2개동) 주차장 이용의 경우에도 단지 내로 진입하여 이용할 수 있음
마감재	• 발코니 비확장형과 확장형의 마감재 내용이 상이하며, 일반형과 플러스옵션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은 거실 아트월 타일, 우물천장, 각종 시스템가구, 발코니 창호, 전기오븐, 전동빨래건조대, 주방 상판 콘센트 등이 미제공이 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마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공간별 적용 아이템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욕조 설치면에는 타일이 미시공(샤워부스와 동일하게 난방도 미시공됨)되고 타일 나누기(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됨)가 변경될 수 있고, 배수구는 욕실 내에 1개소만 설치됨 • 견본주택 복도 및 거실 벽체에는 플러스 옵션인 PET(픽처레일 몰딩 포함) 또는 시트 패널, 복도, 거실 및 주방 바닥에는 플러스 옵션인 타일, 거실 및 식당 벽체와 주방가구 상판에는 플러스 옵션인 세라믹 박판 패널, 식당 및 거실 천장에는 플러스 옵션인 우물천장(시트패널 마감 포함)과 리니어 조명, 주방 천장 일자형 특화 조명, 거실 아트월 벽체 간접 등, 주방에는 플러스 옵션인 유리조명과 조명이 조화된 상부장과 장식장, 주방 상판 및 벽체 세라믹 박판 패널, 식당에는umba 장식장 등이 시공되어 있으므로 고급형 플러스옵션 미선택 시 적용되는 기본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적용된 일반 및 주방가구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동일 마감 및 디자인으로 반영되며, 안방 드레스룸 플러스 옵션 가구는 지정 업체이나, 본 공사 시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수급 문제 등이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PVC 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마루 등도 가구와 같이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 시 입찰을 통해 제조사가 확정됨 • 세대에 적용된 타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패턴(세대별로 패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색상, 나누기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인 빌트인가전 등이 설치되는 천장, 바닥(난방 포함), 벽체에는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 또는 페트패널(유상 옵션)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도 변경될 수 있음 • 천장 몰딩은 유상옵션 품목인 벽체 패널 선택 시에만 픽처레일 몰딩이 시공되며, 미선택 시에는 일반 몰딩이 시공됨 • 광폭강마루(160mm 이상 폭)는 99타입에만 설치됨 • 세대 내부 각 실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세대 출입문에 설치되는 손끼임방지장치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착형 타입이 적용되며, 실시공 시 현장여건 및 시공설 등을 고려하여 적용타입 및 디자인이 결정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99타입 주방가구 추가선택 품목인 “주방특화2” 미선택 시 식당면 하부장 상판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MMA(인조대리석)는 자재 규격 특성상 이음새가 발생됨
견본주택/홍보물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이 “풀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브랜드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가스 계량기, 실외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실재와 상이할 수 있고 하향식피난구의 위치도 피난을 위해 층별로 상이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 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풍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난방불가)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LG전자)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 및 기본제공 품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학교관련유의사항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배치계획 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설계변경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형식 등은 굴토 및 지내력 테스트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 경사 부위의 토목 조성 방식, 단지 내외부 레벨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통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중 시공사 특화디자인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시설프로그램, 평면(운동기구 및 고정식 가구 배치 포함), 입면, 단면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와 외부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 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 관련실 급배기구,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 부속동 실외기 공간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및 천장고, 일부 지상 및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 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기본 제공되는 가구 및 마감재 등이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및 조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예정)자는 주변 현황, 개발계획, 사업계획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인사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 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전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에 대해서는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 및 형태 등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CI(적용 시)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방음벽, 영구배수시스템 적용 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프라이버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내외부의 실외기 공간,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인접 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형 BI/CI 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외부로 노출되는 주차장 외벽은 오픈형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은 계단실에만 있음)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설계 제약 등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저류조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인허가 협의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트리브 홈페이지에 반영된 시설 및 아이템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트리브 삼척에만 적용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진입 도시계획도로는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으로 개설 후 불법주차 등으로 출입구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총 849대(아파트 836대, 근린생활시설 13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577대(근린생활시설 13대 포함 되며, “근린생활시설1” 주차는 공용주택과 혼용사용), 지하에는 272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레벨 차로 인해 지하 1층 및 1층 에서는 각동으로 출입동선이 연결되나,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계단의 구조, 형태, 마감재료, 난간 등과 옹벽은 단지 레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제공된 단지 모형 및 각종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초 인허가 도면(오류)에는 보강토 블록 소단 부위에 교목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 및 식생이 불가능하므로 실시공 시 미반영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배치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 방음벽 및 방호벽 등에 따라 단차부 등의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주, 도로선형,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 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와 전실 및 홀의 형태, 크기 등이 다름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I 및 BI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랑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신축되는 인접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의해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대지레벨 차이에 의해 반영된 옹벽, 조경석, 난간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101동 전면/104동 후면 일반 놀이터, 102동 전면 물놀이터), 전체 동이 필로티 구조에 따라 동과 인접하여 보도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홀 및 계단실 5개층마다 1개소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패턴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외벽 및 PIT층 외벽, 콘크리트 옹벽 등에는 석재질감 도장이 적용됨 • 아파트동은 보행자 주출입구 기준으로 지정석재 마감이 적용되며, 주차장 외벽과 연속하여 면하거나 PIT 외벽 부위에는 석재질감 도장이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외벽은 지정석재로 마감되며, 그 외 주차장, 외부시설물 및 콘크리트 옹벽 등에는 도장이 적용됨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인허가청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 및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주출입구 또는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 폭, 연결경 및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각동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상이하며, 주차구획 및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인해 일부 동은 출입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아파트 홀, 필로티(벽 및 기둥 석재질감 도장) 등의 평면과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상난간 턱 높이,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지하층 출입문 및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의 형태(옥상 조형물, 외벽줄눈 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 설치됨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전체 동 옥상에는 단지 내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부에 조성되는 보강토 블록 또는 콘크리트 옹벽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성방식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없음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에 상부 실로 인해 설치되는 단열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로, 비상차로, 쓰레기수거차량동선 등의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 바람 •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규격·사양은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동번호 등이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모형과 홍보물과 달리 변경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붕에 설치되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축소될 수 있음 • 104동 저층 세대는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높이로 인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코어 측면에 옥상까지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구가 설치됨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홍보물,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 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일부 발생될 수 있음 • 경비실 및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조망, 일조,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분리수거(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미설치)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주차장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단지 여건상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 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차구획 운영은 관리주체 책임임 • 차량진출입, 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도로에서의 진입 레벨 등도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전면의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조경은 단지 내 시설로 사용자에게 대해 특정할 수 없으며, 실시공 시 현장여건 및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전면부의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옥상부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실외기 위치 및 형태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1 재활용처리장은 근린생활시설1 동측, 근린생활시설2 재활용처리장은 주차장 공간에 설치예정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동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됨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고는 2,300mm(우물천장은 2,400mm임)이며,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 시 마감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또는 유상오피스 마감 적용에 따라 각 실별 내부 안목치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공간구성 및 형태,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색상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작업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세대간 벽의 임시 개구부가 발생될 경우, 세대간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적벽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됨 •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차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주택형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타입별 공간 및 가구 치수 등을 입주 시 실측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샤워부스, 욕조,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유상옵션인 복도 및 거실 벽체 패널 미선택 시에는 벽지 및 PVC 걸레받이, 일반 물딩이 시공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의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 단위세대 현관에 적용되는 유상옵션 현관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 및 기밀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바닥 및 천장에 프레임 및 레일이 설치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엘리베이터 홀 또는 복도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 •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피난공간에서 공급받아야 함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함 • 공동주택 옥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임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콘센트, 단자함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선풍통의 개소와 위치는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배수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경우, 바닥구배 시공 및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에 따라 타일 나누기, 천장 높이 및 단차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오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 제원, 규격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층차이부분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부위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천장석고보드 부위와 벽체석고보드 부위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물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가전제품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전 반드시 입주자가 직접 개방 후 이용해야 함 •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통신 단자함, 분전함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됨
--	--	--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안목치수 등은 인테리어 마감이 반영되기 이전의 치수로(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거실 아트월 포함) 옵션 등 선택 시 일부 축소됨
	발코니 / 실외기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탁기/건조기 수직배치형 가구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일반 벽부착형 2단 선반이 설치됨 - 다용도실의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으로 인해 외부창에 블라인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의 선홍통 및 배수구는 우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 창호 형태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전동빨래건조대 위치도 층별, 세대별로 상이함 -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방수를 고려하여 다소 돌출되어 시공되고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천장에 오픈되는 피난구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 중 서비스 면적(서비스 면적 초과 부분은 전용면적 산입)은 공급면적에 미포함되어 있는 비주거공간임
	창호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건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전기/설비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 등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내 가스배관은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는 건본주택용이며, 본 공사 시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이 노출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실외기실은 우수 처리를 위한 선홍통임) - 세대 내 동체감지기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거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창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고, 후드가 설치되는 장은 수납이 제한적임 - 본 공사 시 씽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음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랜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소)등은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음(팬트리(대)일 경우는 적용)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고,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 연도는 기능상 외벽으로 돌출되어 시공됨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PIT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무인택배보관소는 주차장 진출입층인 지하 1층에 해당되는 주동 출입구 인근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세대수의 약 15% 범위에서 코어별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방식은 변경될 수 있고, 특정 동 또는 호수에서 거리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총 42대 (완속 40기, 급속 2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의 증감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지하1층 102동 PIT 또는 관리실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1동 좌측 코어 옥탑 지붕에 설치 예정이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수신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

12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공무원 사업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방문은 입주자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원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1개소), *골프연습장]
- * 골프연습장에는 일반타석(4개소), 양손타석(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교육시설 [트리본 북카페(1개소)]
- 보육시설(1개소)
- 주민문화시설 [주민카페(1개소), 경로당(1개소)]
- 주민기타시설 [관리사무소(1개소), 남/여 탈의실(1개소), 남/여 샤워실(1개소), 경비실(1개소)]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감정평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기관 의뢰인 : 대한토지신탁(주)대표이사
- 건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205-4 외 소재 토지
- 평가서번호 : 중앙 152025-0605-001
- 감정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발행일자 : 2025.07.02.
- 감정평가액 : 이백사억육천이백사십일만팔천이백원정(₩20,462,418,2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트리본 삼척)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4100 호	134,798,75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3.15m	3.15m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유효높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응답가속도	메르칼리 진도 등급
I	0.202g	VII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 / 토목 / 기계	소방	전기
회사명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주)대주기술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937,400,300	₩396,000,000	₩622,772,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자
상호명	(주)삼운	대한토지신탁(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6, 7층 (방배동, 인성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6층, 33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법인등록번호	110111-5954452	110111-1492513	194211-000094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법정대수: 총 665대(공동주택 652대, 근린생활시설 13대)

* 설치대수: 총 849대(공동주택 836대, 근린생활시설 13대)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삼운,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 및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삼운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삼운과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삼운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주)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
4.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대한토지신탁(주)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8. 본 특약사항의 각 내용은 모집공고의 다른 모든 내용에 우선합니다.
9.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분양계약 목적물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대한토지신탁(주)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삼운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한토지신탁(주)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1
- 사업방식 : 분양형토지신탁사업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삼척시 건축과(승인번호 : 2751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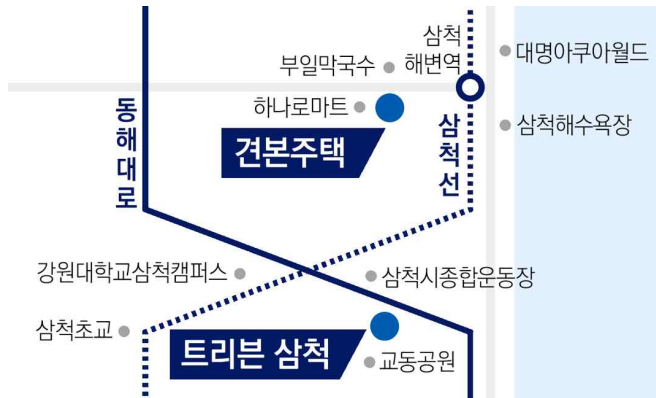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트리브삼척 견본주택(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90-2 / ☎ 033-573-5003

※ 보다 자세한 공사의 범위 및 마감재 등의 확인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안내



전용 84m²/99m² 총 418세대

033.573.5003

시행 **M PLUS**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CO., LTD

시공 **두산에너지빌리티(주)**

위탁 **(주)삼운**